#### 게시물 관리 규정

### 제1조 (게시물)

- ① 게시물은 홍보 및 정보 전달을 하는 벽보를 이른다.
- ② 게시물은 내부 게시물과 외부 게시물로 분리된다.
- ③ 내부 게시물은 장영신학생회관 내부에 부착된 게시물을 말한다.
- ④ 외부 게시물은 장영신학생회관 외부에 부착된 게시물을 말한다.

# 제2조 (게시물 부착 공간)

- ① 내부 부착 공간은 장영신학생회관 내 학생 공용 게시판, 노출 콘트리트 벽면, 계단 난간, 전시계단 내 기둥을 이른다.
- ② 외부 부착공간은 장영신학생회관 옥상 난간을 이른다.

# 제3조 (게시물 제한)

- ① 내부 게시물의 크기는 A1(594mm x 841mm) 이하로 제한한다.
- ② 외부 게시물의 크기는 900mm x 7,000mm 이하로 제한한다.
- ③ 외부 게시물의 목적이 직접적인 영리추구이거나, 게시 주체가 학내 구성원이 아닌 경우 홍보비용을 학생문화공간위원회에 지급한다.

# 제4조 (게시물 부착 규칙)

- ① 게시한 게시물은 홍보주체가 직접 철거한다.
- ② 게시물에는 철거일, 홍보 단체 책임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한다.
- ③ 철거일은 부착 신고일로부터 31일 이내로 제한한다.
- ④ 다른 게시물과 겹치지 않게 부착해야 한다.
- ⑤ 내부 게시물은 제5조를, 외부 게시물은 제6조를 따른다.

### 제5조 (내부 게시물 규칙)

- ① 내부 게시물은 신고대장에 작성 후 부착할 수 있다.
- ② 내부 게시물은 내부 부착공간에 부착한다.
- ③ 내부 게시물은 투명색 테이프를 이용하며, 청테이프 등 벽면에 훼손이 되는 부착제를 이용할 수 없다. 공용게시판의 경우 자석으로만 부착할 수 있다..
  - ④ 같은 내부 부착공간 내에 지정된 개수의 게시물만 부착 가능하다.
    - 1. 공용게시판 게시판 1개당 하나.
    - 2. 노출 콘크리트 벽면 1면당 하나,
    - 3. 계단 난간 3칸당 하나,
    - 4. 전시계단 기둥 1면당 하나
  - ⑤ 내부 게시물은 제한 없이 연장 게시가 가능하다.
- ⑥ 장영신학생회관 내 방을 사용 중인 단체는 방문과 방앞 벽에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게시물을 부착할 수 있다.
- ⑦ 장영신학생회관 내 공간을 사용 중인 단체는 붙일 수 있는 장소 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사용 공간 내부, 문, 사용공간 앞 벽에 대해 게시물 관리 권한을 위임한다.

# 제6조 (외부 게시물 규칙)

- ① 외부 게시물은 외부 게시물 게시 신청서 작성 후 학생문화공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
  - ② 외부 게시물은 외부 부착공간에 부착한다.
  - ③ 외부 게시물은 노끈 등 게시물 고정물로 고정하여, 학생문화공간위원회의 게시 승인을

# 받아야 한다.

- ④ 외부 게시물은 동일 단체에 의해 한 학기 내 3번까지 게시 가능하다.
- ⑤ 1번의 신청에는 1개의 게시물만 게시 가능하다.

#### 제7조(철거 규칙)

- ① 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6조를 지키지 않은 게시물은 학생문화공간위원회에 의해 임의 철거가능하다.
  - ② 게시물은 전시를 위해 학생문화공간위원회에 의해 임의 철거 가능하다.
- ③ 위 조항 외에도 게시물의 내용이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등 학내 구성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심의하에 임의 철거 가능하다.
  - 1. 욕설이 포함되어 있거나 모욕감을 유발하는 경우
  - 2. 시각적인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
  - 3. 음란물이거나 성적 묘사가 포함된 경우
  - 4. 학내 활동과 관계가 없는 광고인 경우
  - 5. 아무런 정보도 전달하지 않거나 알아보기 힘든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
  - 6.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
  - 7. 사행성 광고인 경우

#### 제8조 (페널티 제도)

- ① 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6조를 지키지 않은 경우 및 제7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,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단체에 경고 1회 처분한다.
- ② 경고 2회 처분시 처분날로부터 90일간 게시물을 부착하지 못한다.
- ③ 경고 3회 처분시 처분날로부터 365일간 게시물을 부착하지 못한다.
- ④ 각 단체의 경고 횟수는 매년 봄학기 개강일을 기준으로 초기화된다.

### 제9조 (규격 외 게시물 심의 제도)

- ① 규격 외 게시물 심의 제도는 학생문화증진 및 다양성을 위하여 존재한다.
- ② 게시물이 제1조, 제2조, 제3조,제4조,제5조,제6조와 다른 경우,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심의하에 규격 외 게시물 심의 제도를 통해 게시를 승인한다.
- ③ 심의 요청문 에는 어떤 세부조항에 대해 심의가 필요한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.
- ④ 심의를 받은 게시물에 대해 제 7조와 제 8조를 시행할 때 심의 대상 조항을 심의한 조항으로 바꾸어 적용한다.

#### 제10조 (기타 사항)

① 홍보비용으로 제공된 비용은 장영신학생회관 비품구입비로 사용되어 학생문화 증진을 위한 문화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.